

## 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628호 1999. 1. 18

### 개 정 이 유

농어촌주거현황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읍·면의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시의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1호)
- 나. 종전에는 농어촌주거현황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동 계획의 수립절차를 간소화 함(법 제3조제3항).
- 다. 농어촌주거현황개선지구의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구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4조제1항)

- 라. 종전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시·군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군의 농어촌주거현황개선사업계획을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에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었음에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는 자치구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제2항).
- 마. 농어촌주거현황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범위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등의 허가를 추가함(법 제6조제1항).
- 바.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주택의 품질관리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행정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지역 또는 면지역”을 “읍·면지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

수·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는 내무부령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로 한다.

③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은 시장·군수의”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행정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무

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10.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제7조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 본문 단서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를 “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예산청장”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중 “관할시장·군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시장·군수가 제13조제1항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3조의”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5조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을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시·군별, 읍·면별”을 “시·군·자치구별, 읍·면·동별”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③(농어촌거주환경개선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지정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확정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